표준샘플계약서

|  |  |  |  |  |
| --- | --- | --- | --- | --- |
| 계  약  자 | 발주처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 | | |
| 계약상대자 |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206)  ○ 상 호 : 주식회사 케이티  ○ 대 표 : 대표이사 ㅇ ㅇ ㅇ | | |
| 계  약  내  용 | 계약명 | [OOO 시스템 구축 계약] | | |
| 계약금액  (VAT포함) | 금 [ ]원  (₩[ ]) | | |
|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 ]% | | |
| 지체상금율 | [ ]/1,000 | | |
| 구축기간 | 20[].[].[]. ~ 20[].[].[]. | | |
| 구축장소 | 계약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함. | | |
| 하자보증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 ]년 | 하자보수보증금율 | [ ]% |
|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계약일반조건 1부  2. [ ] 1부  **20[ ].[ ].[ ].**   |  |  | | --- | --- | | **“발주처”** | **“계약상대자”** | | 상 호:  사업장주소: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인) | 상 호: 주식회사 케이티  사업장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206)  사업자번호 : 102-81-42945  대표자성명**:**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ㅇㅇㅇ (인) | | | | | |

**계약 일반 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에 [OOO 시스템 구축 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실한 계약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물)**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납품 및 설치하는 제품의 품목과 수량은 『붙임2. [ ] 』의 명세(이하 “본 계약목적물”이라 한다)와 같다.

**제3조(구축)**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구축기간 이내에 발주처가 지정하는 구축장소에 본 계약목적물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 계약목적물의 구축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된 제품의 망실,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품의 망실 등이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목적물의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 후 그 사실을 발주처에 통지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처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본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검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처는 제2항에서 정한 검수기간 내에 검수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이하 검수에 합격하거나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을 “검수완료일”이라 한다).

④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목적물의 검수에 있어 쌍방 다툼이 발생될 경우 제3의 공인 검수기관에 의뢰하여 검수를 받을 수 있다. 검수비용의 부담주체는 별도 협의 하에 정한다.

⑤ 발주처는 검수결과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검수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수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구축기간 내에 본 계약목적물을 납품 및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 지체상금의 합은 본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발주처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한 검수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 및 설치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발주처 내의 화재 등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구축기간 내에 본 계약목적물을 납품 및 설치한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축기간 이후에 제4조 제5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날부터 최종 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재검수에 소요된 기간이 제4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구축기간을 경과하여 본 계약목적물을 납품 및 설치한 경우에는 구축기간 익일부터 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6조(계약금액의 지급 및 가산금)**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아래 각 호의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 [ ]원(VAT포함)

2. 지급기한 : 본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수완료 후 [ ]일(이하“지급기한”이라 한다) 이내 완납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의 지급기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최초 납기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계약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납된 계약금액에 가산하여 발주처에게 청구한다.

**제7조(소유권의 이전 등)**

① 계약상대자가 구축한 본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은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전액의 지급을 완료한 때에 발주처에게 이전된다.

② 발주처는 계약금액 전액의 지급을 완료하기 전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합의 없이 본 계약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및 담보제공, 대여, 기타 유사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8조(계약이행 보증 및 하자보증기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 ] 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계약이행보증각서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수완료 후 하자보증보험증권 또는 하자보증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검수완료일로부터 [ ] 년(이하 “하자보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증의 의무를 진다.

③ 발주처는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장애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9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가 아닌 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내에 정상의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하자보증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목적물의 작동이 발주처에게 제공되는 매뉴얼의 내용과 일치함을 보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

2. 매뉴얼 사용법에 어긋난 발주처의 사용 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목적물의 작동시스템이 수정된 경우 등 기타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지급보증)**

발주처는 계약체결 후 [ ] 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 ] 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의 계약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 ] 일 이내에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부로부터 본 계약에 관한 영업의 취소 또는 정지를 당한 경우

3. 상대방에게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시신청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신청 또는 진행이 되었을 경우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의 본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요재산의 양도, 압류, 가압류 등으로 상대방의 신용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6.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분 기타 거래정지를 당하여 본 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7. 발주처가 제10조의 기한 내에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상대방의 신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어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항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12조에 따른다.

**제12조(손해배상)**

①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본 계약의 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경우

**제13조(비밀유지의무)**

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술상, 업무상 및 영업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제∙해지 이후에도 [ ] 년간 유효하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 담보제공 기타 처분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하에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은 제안서, 양해각서, 사전협의 등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당사자간에 서면 또는 구두로 본 계약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 내용을 대체하는 최종적인 합의이다.

② 본 계약의 내용 및 용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견해와 해석이 다른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관련 법령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를 고려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계약의 변경)**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대방에게 본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서면합의로써 본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해결하되,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가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